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창 업 경 제 과

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 미 시

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
- (당초) 2026년 12월 31일 → (변경) 2031년 12월 31일

나. 용어, 인용사항 및 문구 등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10조, 제14조, 제15조, 제22조, 제24조, 제2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,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,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중소기업육성기금”을 “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구미시”를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애로를 해결 하는”을 “애로를 해결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”(이하 “창업투자회사”라 한다)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”를 ““벤처투자회사”라 함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”를 “벤처투자회사”로, “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”를 “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또는 제63조의2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 중 “라함”을 “라 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4호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구미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「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제4호 “창업투자회사”를 “벤처투자회사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구미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호 중 “설립허가를”을 “설립승인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“창업투자회사”를 “벤처투자회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 중 “제18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설치사업자로 지정받은자 및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6조”를 “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 및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 “벤처기업전용단지·벤처기업집적시설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”을 “벤처기업집적시설,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”을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제6조제3항”을 “제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제6조제3항”을 “제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“산학관컨소시엄사업”(이하 “컨소시엄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등을 지역의 대학과 구미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기업이 개발비를 분담하여 개발 또는 개발애로를해결 하는 것을 말한다. 5.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“(이하 “창업투자회사“라 한다)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----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---------- 애로를 해결하는 ---------. 5. “벤처투자회사”라 함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----------

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6. “벤처투자조합”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.	6. ---------- 벤처투자회사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또는 제63조의2 ----------.
7. ~ 10. (생 략)	7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“공동창고설치”라함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등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창고를 건립하거나 공동창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.	11. ----------라 함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
12.·13. (생 략)	12.·13. (현행과 같음)
14. “지역특화산업”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여건을 비추어 자원·기술·인력등에서 현실적·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으로서 시장이	14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구미시

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	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.
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 2031년 12월 31일 ----------.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	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미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	② 시장---------- ----------.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략)	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기금관리·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·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--- 「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---------- 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융자대상)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	제10조(융자대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자로 한다.	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창업투자회사	4. 벤처투자회사
5. 삭 제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이차보전 절차) ①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차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, 이차보전은 5% 이하로 하며 보조금은 융자를 추천받은 기업체에서 협조은행에 융자를 받은 즉시 구미시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차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거 가동조사를 개별로 실시하여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한다.	제14조(이차보전 절차) ① ----------시장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융자대상)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.	제15조(융자대상)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2의	3.----------

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(공공기관을 우선한다)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	---------- 설립승인을 ----------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창업투자회사	7. 벤처투자회사
8.·9. (생 략)	8.·9. (현행과 같음)
10. 삭 제	
11.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18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설치사업자로 지정받은자 및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내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사업자로 계약체결된 비영리 법인	11.----------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 및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12조----------
12. 벤처기업전용단지·벤처기업집적시설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	12. 벤처기업집적시설,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
13. (생 략)	13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업무의위탁)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동화·정	제22조(업무의위탁) ----------

보화·기술개발사업등 추진에 관한 전문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되는 법인·단체등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선정 등 융자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24조(사후관리) 시장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	제24조(사후관리) ---- 제6조제2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25조(위탁사무에대한검사등)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규칙에 정한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25조(위탁사무에대한검사등) ① 제6조제2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생 략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~ ③ 생 략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

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9. 생 략

10. “벤처투자회사”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.

11. “벤처투자조합”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.

12. ~ 13. 생 략

제50조(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생 략

2. 벤처투자회사

3. ~ 7. 생 략

② ~ ⑦ 생 략

제63조의2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) ① 제50조제1항에도

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벤처투자회사

2. ~ 4. 생 략

② ~ ⑥ 생 략

□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제18조(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)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·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)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.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~ ⑥ 생 략

□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

제11조(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

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(이하 “진흥시설”이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(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)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~ ⑥ 생 략

제12조(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·조성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(이하 “진흥단지”라 한다)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(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)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~ ④ 생 략

□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68조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)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.

② ~ ⑧ 생 략

소 관 부 서		창업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권 미 영
	팀 장	공 민 정
	담 당 자	이 태 인 (480-6133)